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00
----------	-------

발의연월일 : 2024. 3. 5.

발 의 자 : 서일준 · 이명수 · 김용판
김영식 · 백중헌 · 하영제
이헌승 · 박정하 · 강기윤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

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신설 및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상호 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1까지를 각각 제7조의10부터 제7조의15까지로 하고,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 설치 및 운용 등) ①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

하여 제1항의 광역교통계정을 통해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투자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투자 및 집행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사업계획 승인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의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1항에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협의·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 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제7조의7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에 광역교통”을 “광역교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의5의 제목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도시권의”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의”로, “한다”를 “한다)와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갈등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는 갈등조정 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위원회의 당연직”을 “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6의 제목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제9조의5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별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 ⑨ 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상호 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⑥ (생략)</u> <u><신설></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u>제7조의6(광역교통계정 설치 및 운용 등) ①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u>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
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에 대하여 제1항의 광역교통계
정을 통해 구분하여 회계처리
를 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투
자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
책에 대한 투자 및 집행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광역교통계정의 운
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사업계획 승인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둘 이상

의 시·도를 통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의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
7에 따라 도로 사업계획의 승
인 또는 고시, 변경 승인이 있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
인 · 허가 · 인가 · 결정 · 신고 ·
지정 · 협의 · 심의 등(이하 “인
·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
조에 따른 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 신고, 같
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
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 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
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
용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같
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
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
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
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
의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
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
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
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
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
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
경 등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
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
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
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
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
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
획의 협의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
묘의 개장허가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
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

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
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
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
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
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
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
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
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

<신 설>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제7조의7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u>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u> <u>보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u> <u>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u> <u>도 불구하고 시행기간에 재결</u> <u>을 신청할 수 있다.</u>
제7조의6 ~ 제7조의11 (생략)	제7조의10 ~ 제7조의15 (현행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1까지와 같음)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 내로 구성한다. 1. 2. (생략) 3. <u>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u> <u>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u> <u>람</u> <u><신설></u>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광역교통</u> ----- ----- 4. <u>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u> <u>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u> <u>이 풍부한 사람</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	제9조의5(분과위원회) ① <u>광역교</u>
<u>도시권의</u>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통위원회에 대도시권의</u> ----- ----- ----- ----- 한다)와 제8조제2항제6호

② 권역별 <u>위원회의 위원장은</u>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u>위원회의 당연직</u> 위원이 된다. ③ 권역별 <u>위원회의 위원은</u>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u>심의·의결한다</u>. ⑤ 그 밖에 권역별 <u>위원회의</u>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u>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u>)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	각 목의 갈등사항을 <u>심의·조정·의결하는 갈등조정 위원회</u> (이하 “<u>갈등조정위원회</u>”라 한다)----. ② ----- <u>위원회 및 갈등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u> ----- ----- ----- <u>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의 당연직</u> ----- -----. ③ ----- <u>위원회 및 갈등조정 위원회의 위원은</u> ----- -----. ④ ----- ----- ----- <u>심의·의결할 수 있다</u>. ⑤ ----- <u>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u>----- -----. 제9조의6(<u>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u>) ① ----- ----- ----- -----
---	---

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제9조의5에 따른 분과 위원회-----

-----.

② ----- 분과위원회-----

-----.

③ 분과위원회-----

-----.

④ -----

----- 분과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⑥ ----- 분과위원회-----

-----.

1. -----

-- 경우(제9조제1항제3호 및

2. (생략)

3.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
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
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
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
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신설>

제4호에 따른 위원에 한정하
다)

2. (현행과 같음)

3. ----- 분과
위원회 -----

-----.

⑦ ----- 분과위
원회 -----

-----.

⑧ (현행과 같음)

⑨ 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
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
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u> <u>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u> <u>행할 수 있다.</u> ⑩ ----- <u>분과위원회</u>----- ----- -----.
--	--